서울특별시종로구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설치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1282

제출년월일 : 2007. 6.
제 출 자 : 종로구청장

1. 개정이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법률 제7664호, 2005.8.4공포, 2006. 1.1시행) 및 동법 시행령이 제정되어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종로구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운용 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기금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기타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정비·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안 제4조의2)

1) 위원회의 심의사항

가) 기금운용계획의 수립·변경 및 결산보고서에 관한 사항

나) 기금운용의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

다)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중요한 사항으로서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2)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나. 기금의 재원에 "기타 수입금(지원금)"을 신설(안 제2조제3호)

다. 회계공무원의 명칭 및 관직 변경(안 제5조)

1) 기금출납명령관(주민생활지원국장) → 기금운용관(청소행정과장)

2) 기금출납공무원(청소행정과장) → 기금출납원(재활용담당주사)

라. 결산보고 : 출납폐쇄 후 3개월 이내 → 80일 이내

3. 참고사항

가. 관계법규

「지방자치법」 제133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　　타

1) 신·구조문 대비표 : 별첨

2) 입법예고(2007.4.6 ~ 2007.4.26)결과 : 의견 없음

서울특별시 종로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종로구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설치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종로구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서울특별시종로구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를 "서울특별시 종로구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로 한다.

제1조중 "지방자치법 제133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지역에서 자치구"를 "「지방자치법」 제133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종로구(이하 "구"라 한다)"로 한다.

제2조제1호중 "자치구 관할구역에서 자치단체"를 "구"로 하고, 동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기타 수입금(지원금)

제3조제3호중 "구청장"을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4조중 "금융기관에 별도의 구좌"를 "구 금고에 별도의 계좌"로 한다.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구에 서울특별시 종로구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운용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변경 및 결산보고서에 관한 사항
2. 기금운용의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
3.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중요한 사항으로서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위원회의 위원장은 재활용업무 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청소행정과장이 되며, 위원은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로서 구청장이 위촉하되, 위원회의 3분의 1이상으로 한다.

⑤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⑥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촉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5조제1항중 "기금출납명령관과 기금출납공무원"을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으로 하고, 동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3항중 "지방재정법을 「지방재정법」으로, "기금출납명령관"을 "기금운용관"으로, "기금출납공무원"을 "기금출납원"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관은 청소행정과장이 되며, 기금출납원은 재활용담당주사가 된다.

제8조제1항중 "출납폐쇄후 3개월이내"를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로 한다.

제9조중 "종로구재무회계규칙"을 "「서울특별시 종로구 재무회계 규칙」"으로 한다.

별지 제2호 서식을 다음과 같이 한다.

기 금 출 납 부

년월일	적 요	수 입	지 출	잔 액	비 고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서울특별시종로구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	**서울특별시 종로구 재활용품판매대금 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3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지역에서 자치구**가 수집한 재활용품 판매대금의 적립과 관리에 따른 서울특별시 종로구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지방자치법」 제133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종로구(이하 "구"라 한다)**----------.
제2조(기금의 재원) 기금의 재원수입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자치구 관할구역에서 자치단체**가 직접 수집하는 재활용품의 판매대금 2. 기금 운용에 따른 수익금 **〈신설〉**	제2조(기금의 재원) (현행과 같음) 1. **구**---------- 2. (현행과 같음) **3. 기타 수입금(지원금)**
제3조(기금의 용도) (생략) 1. 재활용품 수집·선별에 따른 장비·물품구입 및 기타 소요비용 2. 〈삭제 2001.2.28〉 3. 기타 재활용 활성화와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3조(기금의 용도) (현행과 같음) 1.~2. (현행과 같음) 3.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제4조(기금의 운용·관리) 기금은 **금융기관에 별도의 구좌**를 설치하여야	제4조(기금의 운용·관리) ---- **구 금고에 별도의 계좌**----------

하며 수익과 안정성이 보장되도록 관리·운용하여야 한다.	----------.
〈신설〉	제4조의2(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구에 서울특별시 종로구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운용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변경 및 결산보고서에 관한 사항 2. 기금운용의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 3.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중요한 사항으로서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위원회의 위원장은 재활용업무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청소행정과장이 되며, 위원은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로서 구청장이 위촉하되, 위원회의 3분의 1이상으로 한다. ⑤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⑥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촉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5조(기금의 운용관계공무원) ①기금의 수입·지출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기금 출납명령관과 기금출납공무원을 둔다. ②기금출납명령관은 주민생활지원국장으로, 기금출납공무원은 청소행정과장으로 한다. ③지방재정법 중 경리관과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명령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공무원에게 각각 이를 준용한다.	제5조(기금의 운용관계공무원) ①----------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관은 청소행정과장이 되며, 기금출납원은 재활용담당주사가 된다. ③「지방재정법」---------- 기금운용관---------기금출납원----------.
제8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구청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후 3개월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 ② (현행과 같음)
제9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기금의 수입·지출 운용 및 결산에 대하여는 종로구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제9조(준용) ---------- 「서울특별시 종로구 재무회계 규칙」----------.

〔별지 제2호 서식〕

기 금 출 납 부

년월일	적 요	수 입	지 출	결재			
				담 당		과 장	국 장

기 금 출 납 부

년월일	적 요	수 입	지 출	잔 액	비 고